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9차 채용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본부 및 소속시설 근로자를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6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장

I 모집 분야

□ 채용분야 *시설별 중복 지원 불가

시설명	구분	분야	채용 인원	주요업무
총 채용인원			4명	
제주사회서비스원	기간제	육아휴직 대체인력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행정업무 - 기획, 예산, 인사, 노무 등 - 돌봄지원, 민간협력 등 사업지원
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정규직	상담원 4급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학대 신고 접수 및 상담, 출동 ※ 착신일정에 따른 24시간 신고상담 및 출동 • 노인학대예방교육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홍보 • 기타 기관 운영에 필요한 업무
	계약직	상담원 4급 (육아휴직 대체인력)	1명	
제주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정규직	요양보호사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 및 이용 노인에 대한 신체활동·일상생활 지원, 건강확인, 의료기관 동행, 조리업무, 프로그램 지원 등

II 응시자격 및 가점기준

응시자격

공통요건

- 성별 제한없음
- 임용예정일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임용이 확정된 후라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시설명	구분	자격요건
제주사회서비스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자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이상으로 정년(만60세)에 달하지 아닌한 자 ● 다음의 자격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9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유관기관, 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4.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사회복지 업무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상당)”범위: 당해연도 「(지방)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별표2에 해당되는 공무원 ※ “공공기관”범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 “사회복지시설”범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의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해당하는 기관 ※ “유관기관·단체”범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 확정 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
	결격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8조
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급] / [상담원 4급] (육아휴직 대체인력)	자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이상으로 정년(만60세)에 달하지 아닌한 자 ●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추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수료한 사람*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 7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p>* 노인학대예방교육 수료증 미제출시 응시자격 미인정</p> <p>○ 노인학대예방교육 온라인 교육 이수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s://www.noinboho1389.or.kr)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이수 <p>**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1항에 따른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서 명시된 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및 유사경력을 기준으로 경력 인정</p>

		※ 추가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실제 운전 가능한 자
	결격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8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
제주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요양보호사]	자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 추가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실제 운전 가능한 자
	결격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8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

가점기준

구 분	대 상	가 점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면접만점 5% 또는 10%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면접만점 5%
사회적 취업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②) .청년 미취업자(만34세 이하)(③)	동점자 발생 시 ①→③순으로 우대

※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되며 접수 시 해당 내용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가점을 받아 채용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Ⅲ 근무조건

시설명	분야	내용
제주사회서비스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기간: 임용일~2027.1.15.이나, 육아휴직자의 복귀시기

		<p>에 따라 계약기간 단축 또는 연장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장소: 제주사회서비스원(제주시 애조로 1254) • 근무시간: 주 40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 • 보수수준: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2,530,990원/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급여: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 법정수당, 퇴직금 (이상 해당자에 한함) - 사회보험 가입
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수탁기간: 2026.12.31.까지이며 위·수탁 법인 변경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음 • 근무장소: 제주시 관덕로7길 3 • 근무시간: 주 40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신일정에 따른 24시간 신고상담 및 출동 • 보수수준: 道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준용
	상담원 4급 (육야휴직 대체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기간: 임용일~2027.2.28.이나, 위수탁 기간(~2026. 12. 31.) 만료 시 위수탁 법인 변경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음 • 근무장소: 제주시 관덕로7길 3 • 근무시간: 주 40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신일정에 따른 24시간 신고상담 및 출동 • 보수수준: 道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준용
제주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요양보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수탁기간: 2026.12.31.까지이며 위·수탁 법인 변경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음 • 근무장소: 제주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비공개) • 근무시간: 4조 3교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쉼터 운영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 보수수준: 道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 정규직 임용 시 임용일로부터 6개월 수습기간 적용 후 근무평가를 통해 정규임용 확정

IV

채용 일정 및 절차

채용 일정

구 분	일정	비고
채용공고	'26. 6. 4.(목) ~ 6. 19.(금)	
지원서접수	'26. 6. 4.(목) ~ 6. 19.(금) 14:00까지	
서류전형	'26. 6. 22.(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26. 6. 23.(화)	
면접전형	'26. 6. 26.(금)	
최종합격자 발표	'26. 7. 1.(수)	
임용예정일	'26. 7. 6.(월)	

※ 상기 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채용 절차

전형	심사방법					
서류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방법: 응시자격 기준 적격 여부 심사, 적격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응시자격 부적격, 제출서류 미비자를 제외한 전원 면접전형 응시기회 부여 					
면접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 장소: 제주사회서비스원(제주시 애조로 1254) • 면접 방법: 개별 또는 그룹면접(블라인드 면접) • 합격 배수: 선발예정 인원 이내 • 면접 평정요소 					
	공적책무성 등	이해력·지식수준	의사발표 정확성·논리성	인성 및 직업관	창의성 및 전문성	배점
	20	20	20	20	20	100

□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면접 평정요소	합격자 결정 기준
① 공적 책무성 사회서비스원의 목적성 부합여부(20점) ② 이해력 및 지식수준(20점)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20점) ④ 인성과 직업관(20점) ⑤ 창의성 및 전문성(20점)	◦ 평정요소별 모든 시험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후 면접 및 발표 모두 60점 이상 득점자 중 합산 점수 고득점자 순 【동점자 처리】 -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 2순위: 장애인 - 3순위: 사회적취업취약계층 및 우대 자격증(①→④) - 4순위: 면접 평정요소 고득점 순(①→②→③→④→⑤)

- ※ 면접전형 결과 시험위원 평균 점수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반영하고, 나머지는 절사
- **예비합격자**: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채용결격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최종예비합격자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 순번(선발인원의 3배수 이내)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음

□ 임 용

-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장과 근로계약 체결

V **지원서 접수**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외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여야 함
-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
- 접수 기간 : 2026. 6. 4.(목)~ 6. 19.(금) 14:00 까지
-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신 경우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제주사회서비스원 채용담당자 ☎070-4173-8696

제출대상	시설명	제출서류	비고
필수 제출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원서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동의서 	<p>온라인 채용시스템 내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 초본(개명·병역사항 포함) 	<p>-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미표기로 발급 제출</p>
필수 제출	해당자 필수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사본 * 사회복지사인 경우 자격증명서 추가제출 [발급처] https://www.welfare.net/lic/ • 운전면허증 사본 • 노인학대예방교육 수료증[노인보호전문기관] * 미제출 시 응시자격 미인정 • 재직/경력 증명서 *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필수 첨부 •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p>- 재직/경력 증명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p>
해당자 제출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국가보훈부 발행) • 장애인 증명서 • 사회적 취업 취약계층 증명서 	
최종 합격자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13자리 모두 표시) • 일반채용신체검사서*(영수증 및 통장사본) • 6개월 이내 반명함판 사진 1부(3*4cm) •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 가족채용 제한여부 확인서 • 기타 요청서류 등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 공고**하므로 수시 확인 바랍니다.
- 정보 가림 채용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견될 경우 전형별 단계에서 임의로 가림 처리됩니다.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위조인 것으로 확인되거나, 고의로 누락·추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예정일에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는 즉시 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사회서비스원의 모든 시험에 응시를 제한합니다.
- 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통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시험 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채용 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예외사유: 채용 시험과 무관한 질의사항, 개인정보(응시자, 시험 출제자, 평가 관련자)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
- 채용 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불합격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청구서가 접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청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사지원서 **제출 이후 추가 제출 서류는 불인정합니다.**
- 그 밖에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경영기획팀(070-4173-869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사회서비스원은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 청탁을 받지 않으며, 부정합격이 확인되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결격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서 규정한 횡령 및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13.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